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59
----------	-------

발의연월일 : 2026. 5. 26.

발 의 자 : 손 솔·전종덕·용혜인  
정혜경·윤종오·전진숙  
임미애·윤준병·김종민  
최혁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예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행위를 금지하며, 예술인보호관 제도를 통하여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조사 등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OTT 플랫폼 및 외주 제작 구조의 심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이 만연하고 있고, 현행법의 우선 적용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예술인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의 겸직 구조로 운영되고 신고 및 조사 사건 처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질적인 조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명시하며, 예술인보호관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27조 제1항·제6항 등).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하도록”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을 “담당관”으로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생략)

② (생략)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① ~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 4.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⑥ 보호관의 자격·직무·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

-----  
-----  
-----  
-----  
----- 전  
담하여 수행하도록-----.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  
담당관-----

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